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2. 27 선고 2019가단1479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20. 1. 16

판결 선고 2020. 2. 27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3,128,054원과 그 중 32,965,485원에 대하여 2019. 3. 30.부터 2019. 4. 18.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의,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,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3,128,054원과 그 중 32,965,485원에 대하여 2019. 3. 3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보증담 보를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D 주식회사, 보험기간을 2018. 3. 28.부터 2020. 3. 27.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(이하 사건 보험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피고는 피보험자인 D 주식회사와의 위촉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 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변상하고, 이를 지체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원고와 사이에 약정하였다.

다. 피고는 D 주식회사와의 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 환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고, 이에 원고가 2019 . 2. 27.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D 주식회사에게 32,965,48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.

라.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%이다.

이에 따라 위 보험금 32,965,485원에 대한 2019. 3. 29.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62,569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, 이하 같

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의 구상금 지급 의무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피고의 수수료 반환채무 등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보험금 32,965,4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62,569원의 합계 33,128,054원과 그 중 32,965,485원에 대한 2019. 3. 3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. 4. 18.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,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서 정한 연 1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

특례법에서 정한 연12%의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D 주식회사의 춘천센터장인 E이 피고의 남편인 F과 피고에게 보험판매실적을 올리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유하여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,당시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으며, 위 E은 2018. 10월경 위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, 결국 D 주식회사는F을 속여서 그가 판매한 보험으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서도 해지 등으로 인한부담을 F측에 떠넘기는 것이므로 피고가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수수료 반환 등 채무가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,을1호증만으로 피고가 피보험자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가 없다는 등의위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일수 없다.

3.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유명일